

● 제326회 ●  
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 
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
**검 토 보 고 서**  
(의안번호 : 2107)

2024. 9. 4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  
수 석 전 문 위 원

## 【서울특별시장 제출】

의안번호 2107

### I. 동의안 개요

#### 1. 제출경위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  
나. 제출일자 : 2024년 8월 12일  
다. 회부일자 : 2024년 8월 14일

#### 2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민 대상 수어인구 확대를 위한 수어교육 지원 사업으로 2024년 12월 31일자로 협약 만료됨.(’ 22.1.1.~’ 24.12.31.)
- 나. 서울시민 대상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수어교육 운영으로 수어에 대한 이해 확대와 공인수어통역사 및 전문수어통역사 양성으로 농아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의사소통을 지원하고자 수어교육에 대한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, 농아인들의 자립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수행 필요.
- 다.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

- 전문수어교육으로 공인수어통역사 양성
- 전문영역 강의를 통한 수어통역사 역량강화
- 청각장애인 강사와의 만남을 통한 장애인식개선
- 수어를 배우고자 하는 일반 시민 교육 등

나. 위탁범위 : 사무운영, 부동산, 비품 및 장비 관리 일체

다. 위탁기간 : ' 25. 1. 1. ~ ' 27. 12. 31.(3년)

라. 운영개요

기관명	소재지	현 운영법인	총 위탁기간 (위탁횟수)	위탁기간 (위탁횟수)	위탁금 (백만원)
서울수어전문 교육원	서대문구 경기대로 15엘림넷 5층	한국농아인 협회 서울시협회	'09.4.13.~ '24.12.31. (7회)	'22.1.1.~ '24.12.31. (7회)	613('24년)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71조(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),  
「한국수화언어법」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## Ⅱ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주병준)

### 1 동의안의 개요

- 본 동의안은 ‘24년 12월 31일자로 서울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서울수어전문교육원의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<sup>1)</sup>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.

### 2 동의안의 주요내용 검토

#### 가. 농인 및 수어 관련 현황

-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대화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① 입모양의 변화에 따라 말을 이해하는 ‘구화-독화’에 의한 대화방법 ② 손으로 단어나 문장을 표현하는 수어(手語), 손가락으로 한글의 자모를 표시하는 지화(指話) ③ 비장애인과 대화할 때 글을 쓰는 필담으로 구분할 수 있음.<sup>2)</sup>
-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 중 수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‘농인’이라고 하며, 서울시 농인 현황은 별도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, 서울시의 청각장애인 수는 약 63,000명으로 나타남. 이 가운데 한국 농아인협회 서울시지회에 등록된 회원은 약 2,000명으로 파악됨.

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

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재계약·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2) 권정숙·김두영·신희정. “청각장애성인의 생애주기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교육·복지 요구분석”. 성인계속교육연구 14:2(2023.6.30.)

-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한 “2023년 한국수어 활용 조사”에 따르면 수어를 주된 의사소통 방법으로 사용하는 만 20세 이상 청각장애인은 30.1%로 나타남.

<표> 연령대별 수어 사용현황<sup>3)</sup>

	전체	20대	30대	40대	50대	60세 이상
수어 사용	30.1%	32.1%	60.7%	69.9%	55.3%	19.3%

- 사회적 인식 개선에 따라 수어교육의 수요가 증가<sup>4)</sup>하고, 2022년 「한국수화언어법」의 개정으로 재난 질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발표에 수어통역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개정되는 등 수어교육의 중요성 및 수어사용 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음.<sup>5)</sup>
- 「한국수화언어법」 제4조에서는 한국수어를 교육·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 사용환경을 수립·시행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.
- 농인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수어를 통해 다양한 정보에 공정하고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됨. 따라서, 수어를 보급하고 수어 사용환경을 구축·개선함으로써 농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. 수어는 2016년 「한국수화언어법」 시행 이후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받으면서 사회적 위상이 강화되었음.

3) 국립국어원, 「2023년 한국수어 활용 조사 결과 요약」

4) 전국수어통역센터 수어 학습자 수 : (2020년) 31,572명→(2021년) 40,712명

5) 문화체육관광부(2023). “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(2023~2027)”.

## 나.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법적근거 및 필요성

- 민간위탁은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근거로 ‘각종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, 검사, 점정,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’로서,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임.
- 재위탁이란,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.
  - 해당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.
- 해당 업무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수어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기관으로의 위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.

## 다. 사무 민간위탁 추진경과

- 서울시에서는 2009년부터 의사소통이 어려운 농인 및 수어사용자를 위하여 전문수어교육을 통해 수어통역사를 양성하고,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서울수어전문교육원을 운영해왔으며, 그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음

## <표>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위탁경과

구분	1차	2차	3차	4차	5차	6차	7차
위탁 기간	'09.4.13~'09. 12.31 (공모)	'10.1.1~'10.1 2.31 (공모)	'11.1.1~'13.1 2.31 (재계약)	'14.1.1~'15.1 2.31 (재계약)	'16.1.1~'18.1 2.31 (재계약)	'19.1.1~'21.1 2.31 (공모)	'22.1.1~'24.1 2.31 (재계약)
수탁 자	(사) 한국농아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						

### 라.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현황 및 평가결과

- 2024년 현재 서울수어전문교육원의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음.

- 운영법인 : 사)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협회(회장 허정훈)
- 소재지 : 서대문구 경기대로 15(엘림넷빌딩 5층)
- 규모 : 임차면적 703.212㎡ (지상 5층)
- 위탁기간 : ' 22.1.1.~' 24.12.31.(최초위탁일 : '09.4.13.)
- 종사자 : 5명 (원장 1명, 직원 4명) ※ 강사 18명
- 24년 예산 : 612,064천원 (시비 100%)

- 서울수어전문교육원에서는 현재 6개의 교육장을 활용해 총 57개의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며, 수강인원은 '23년도 기준 7,941명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.

### <표> 최근 3년간 운영실적

연도별	2021년	2022년	2023년
	4,309명	7,827명	7,941명

- '24년 실시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는 81.82점(전체 배점의 75점 미만시 해당 수탁기관과 재계약 배제)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. 해당 평가에서는 수어 교육과정이 단계별로 체계화되어 있으며, 취업으로 연결한 실적 등을 우수사항으로 평가하고 있음.

- 개선요청사항으로는 기관의 환경변화, 조직관리방향 등을 문서로 정리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점, 최근 2년간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미비, 결산보고서 부속명세서 첨부 등 사업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연속적인 지적사항이 나오는 점, 수화통역사 자격취득 후 취업과 연계한 실적의 체계적 관리필요성 등이 지적되었음.
- 동 사무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서도 적정 등급을 받았으나, 권고사항으로 기본과정·통역과정의 수강인원 및 농아인 수강비율을 제고하고 '23년 기준 32%인 국가공인 수어통역사 합격률<sup>6)</sup>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가 있었음.

### 3 종합의견

- 서울시에서 수어교육과 관련된 사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에 수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- 단,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 따르면 기존 위탁기관이 다년간의 위탁사무 수행 경험에도 불구하고 예산업무처리 등에서 지속적인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한 개선 필요가 제기되었음. 따라서, 집행기관에서는 위탁기관 선정 시 해당 지적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향후 지도·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문 의 처  
도미화 입법조사관 (02-2180-8147)

6) 연도별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합격자 현황

구분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
교육원 합격자	21명	40명	12명	17명	5명	13명
(누계)	(269)	(309)	(321)	(338)	(343)	(356)
합격률	39%	28%	27%	20%	20%	32%
전국 합격자	54명	144명	44명	83명	25명	41명